



교육감 규정

번호: A-450

제목: 비자발적 전학 절차

항목: 학생

발행: 2011년 1월 20일 목요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09년 6월 22일 자 규정 A-450을 대체합니다.

변경 내용:

- 통합 서비스 센터(Integrated Service Center)의 학생 정학 담당 디렉터/찰드 퍼스트 네트워크(Children First Network)의 안전과 정학 담당 디렉터에게 하던 추천들이 학교와 청소년 개발 담당실(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의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섹션 II(B), 섹션 III, 섹션 III(6), 섹션 IV(A) 및 IV(B), 섹션 IV(C) 및 IV(D))



교육감 규정

번호: A-450

제목: 비자발적 전학 절차

항목: 학생

발행: 2011년 1월 20일 목요일

요약

본 규정서는 유치원-12학년 사이의 일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자발적 전학을 관장합니다. 본 규정은 2009년 6월 22일에 발표된 교육감 규정 A-450 비자발적 전학 절차를 대체합니다.

I. 개요

이 규정은 뉴욕주 교육법 섹션 3214(5)에 따라 일반 교육을 받는 학생들(IEP가 없는 학생들)의 비자발적 전학 실시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안 중재들이 비자발적인 전학을 시키기 전에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행동이나 학업기록으로 볼 때 해당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 학생이 전학하거나 다른 곳에서 교육받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 학교장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비자발적 전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육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알림: 학생이 규율 규정과 관련 교육감 규정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정학 처분을 받을 만한 비행을 저질렀다면, 정학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소지품과 사물함 등의 개인 물품 및 금속 탐지기 사용 검색은 학교 안전 요원이 학교장/대리인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II. 예방 절차

A. 학교에서의 방법

최상의 학습 환경을 촉진하고 교육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품행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과 대처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교직원의 책임입니다. 학생의 품행 및/또는 학업 기록이 학교 생활의 적응에 문제를 보일 경우,

교직원은 학생의 품행 문제를 다룰 계획을 개발 및 방법을 모색하고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와 함께 대안에 관해 논의하여야 합니다.¹

이들 계획은 대안적인 교재의 활용 및/또는 접근, 대안적인 교실 운영 기술 활용, 교육 중재, 대안적인 학급 배정, 가이드스 지원 및 개인과 가족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방 노력들은 학생의 기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만일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요하는 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학교에서는 즉시 특수 교육 위원회(CSE)에 특수 교육 평가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B. 자발적 전학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노력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 학교장이 전학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며 다른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학교장은 학부모와 함께 전학을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만약 학부모가 전학에 동의하며 학교와 청소년 개발 담당실 (OSYD)의 수석 책임 담당관(CEO)의 지명인으로써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가 동의한다면, 자발적 전학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는 보로 등록 담당 수석 디렉터/학생 등록 담당실의 대리인과 논의하여 적절한 학교 배정을 결정합니다. 만약 학부모가 전학에 동의하지 않으며 교장이 학생의 전학을 원한다면, 본 규정서에 정해진 바와 같이 비자발적인 전학 절차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비자발적 전학 절차가 계류 중인 동안, 학생은 반드시 관련 교육감 규정에 따라 정학 처분을 받아 다른 곳에서 학업 하도록 지시 받거나 또는 학부모가 전학을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학교에 반드시 계속 다녀야 합니다.

III. 학교장의 컨퍼런스

비자발적이 전학 절차를 시작하려면, 먼저 학교장은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와 논의하여야 합니다.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가 전학 추천에 동의하였다면, 학교장은 다음 순서로 전학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¹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보호자(들), 학생과 부모 관계나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 또는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합니다.

A. 통지

1. 학교장/대리인은 학생의 전학 추천이 고려되고 있음을 서술한 통지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합니다. 통지문은 반드시 학교장이 참석하는 비공식적 컨퍼런스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법률 자문 또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개인이라도 함께 참석할 권리가 있다는 정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2. 통지문은 또한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의 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받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3. 통지문은 또한 학교장과의 컨퍼런스 후에 학교장이 전학이 정당한 것이라 믿지만 학부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학부모는 전학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B. 학교장의 비공식적 컨퍼런스

1. 학교장의 컨퍼런스는 학부모, 교사 및 기타 학교 관리자들이 학생 전학 고려 결정에 관련된 학교장의 사실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논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컨퍼런스는 학생의 학업적 그리고 행동에 관련된 필요 및 이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에 활용되었던 조치 및 방법들에 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학교장은 반드시 컨퍼런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학교장은 즉각 컨퍼런스 날짜를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퍼런스의 두번째 재조정 요청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공지가 이루어진 후, 만약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학교장은 교직원들이 학부모와 학생의 참석을 확실히 하기 위해 취한 노력을 포함하고 컨퍼런스를 진행할 것입니다. 학부모는 공지한 날짜에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는 것과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통지 받게 됩니다.
3.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는 변호사 또는 기타 컨퍼런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동반하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필요하다면 학생에 관해 잘 알고 있는 학교 관계자에게 컨퍼런스 참석 조정의 어려움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컨퍼런스는 공식적이고, 논쟁적인 절차가 아니고 안내 절차이며 적대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변호사 또는 학생 대변인은 본 컨퍼런스의 비공식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부모님께서 선호하시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면, 학부모는 컨퍼런스 날짜 전에 학교장에게 연락하여 교육청에 통역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시거나 도움을 줄 통역을 컨퍼런스에 동반하고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4.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의 기록 사본을 학부모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5. 컨퍼런스 후에, 전학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5 일 이내에 학생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천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6. 만약 학교장이 학생에게 전학이 이롭게 작용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적절하고 용이한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학교장은 반드시 5 일 내에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에게 전학 추천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의 추천서는 반드시 전학이 필요함을 설명해줄 행동적 및/또는 학업적 문제 및 전에 고려했던 대안 조치 및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해 취했던 조치에 관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장의 추천서 사본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첨부 번호 2 참조).

IV.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OSYD) 심의

A. 사전 책임

학교장으로부터 전학 추천서를 받은 후,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는:

1. 비자발적 전학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고 학생을 대신하여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학교 차원의 노력에 대해 공지합니다.
2. 고려한 바에 관한 학교장의 추천을 수용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학이 제안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B. 통지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는 심의 요청 권리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첨부 번호 3 참조):

1. 이런 전학을 고려하게 된 상세 이유
2. 학생과 학부모가 심의를 하기 위해 십(10)일이 있다는 내용

3. 만약 심의가 요청된다면, 심의 진행을 위한 날짜, 시간 및 장소가 정해질 것이며 제안된 전학이 서면으로 심의 후 결정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즉각적인 전학이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유예될 것이라는 내용. 그러나, 학부모가 즉각적인 전학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이것이 학부모의 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만약 학부모가 십(10)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더 빠른 날짜에 학부모가 전학을 시키도록 동의하지 않는 한, 제의된 전학이 십(10)일이 지난 후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5. 심의 전에 학생의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공지. 이 공지는 또한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법률 자문을 해줄 지역사회 기관들의 목록을 포함한 심의 절차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6. 심의에서 법률 자문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 공지. 학생과 학부모는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을 대변할 증인과 증거를 제출하고 심의 담당관에게 증인의 소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7. 만약 학부모가 선호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면 심의에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통역을 동반 또는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공지.
8. 만약 학부모가 이의제기를 요청하지 않고 십(10)일이 지났거나 학부모가 더 빨리 전학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는 보로 등록 담당 수석 디렉터/대리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학교 배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는 전출 및 전입 학교 교장 양쪽 및 학부모에게 학생이 전학하게 될 것이며 전학 효력 날짜가 언제인지 적은 통지문을 전할 것입니다. 해당 학교는 반드시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C. 심의

만약 학부모가 심의를 요청하였다면,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는 가능한 내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 심의 심의관과 함께 심의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1. 심의는 해당 학교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는 한 실시되지 않습니다.
2. 연기가 요청된 경우에, 심의 담당관은 심의 일을 즉시 다시 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의 두번째 재조정 요청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심의는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여야 합니다. 재조정된 심의 일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재조정이 수용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궤석 심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심의가 궤석 심의로 진행된다면, 심의 담당관은 학부모와 학생의 참석을 위해 학교에서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공지한 날짜에 심의가 진행되었다는 것과 결정된 사항 있다면 관련 내용을 통지 받게 됩니다.
4. 교직원들은 학생이 전학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거나 다른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교직원들과 학부모는 목격자를 참석시키고 질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심의 담당관은 선서를 진행하고 참여하길 주저하는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소환장을 발송하기 전에 관련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재량이 있습니다. 교직원 또는 전학하여야 하는 학생의 학부모 중 누구나 심의 담당관에 연락하여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 또는 학생에게 발급하는 소환장은 교직원이 전할 것입니다. 학생 증인들은 본인이 소환 되었거나 참석에 동의하여 증언을 하기로 결정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이의제기는 테이프 녹음 또는 속기록의 형태로 보존될 것입니다. 학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테이프의 복사본이나 속기록 사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D. 결정

1. 심의 날짜로부터 학교 수업일 기준으로 십일 이내에,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는 반드시 본인의 결정과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한 통지문을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보내야 합니다.
2. 만약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가 전학 추천을 거부하면,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제공해야할 적절한 학업 및 지도 교육에 관한 내용을 결정 통지문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만약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가 추천을 승인하였다면,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는 보로 등록 담당 수석 디렉터/대리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학교 배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는 또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와 전학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등의 특정 정보를 반드시 통지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교는 반드시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전입을 받는 학교의 교장에게 또한 반드시 전학 통지문을 보내야합니다.

4. 학기 중간 또는 성적산정기간 중간에 전학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 어려움을 배제하기 위해, 학생의 전학이 해당 학기나 기간의 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동안, 해당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학습을 합니다.
5. 졸업장을 취득할 수 없는(예, 풀타임 GED 프로그램) 비자발적 전학 또는 파트 타임 프로그램은 학생의 연령에 관계 없이 추천하지 않고 권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6.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의 통지문은 또한 이의제기 요청 권리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V. 이의 제기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교육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².

결정에 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학교 수업일 기준 십일 내 또는 심의 테이프 복사본이나 사본을 받은 후 학교 수업일 기준 십일 내로 접수 되어야 합니다. 이의제기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학생은 전학 갔던 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생의 비자발적 전학에 관한 고려가 결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이의제기가 유예될 때만 교육감으로부터 임시 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VI. 문의처

본 규정 관련 문의 연락처: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218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6784
 팩스: 212-374-5751

Office of Legal Services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308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6888
 팩스: 212-374-5596

²교육감에게 요청하는 이의제기는 동시에 법률 서비스 담당실(Office of Legal Services), Room 308,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로도 전달될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전학 고려에 관한 학교장 통지문

(날짜)

친애하는 (학부모 및 학생) 귀하:

귀 자녀 (STUDENT'S NAME) 학급(CLASS)를 본교에서 전학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생겼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 컨퍼런스가 (TIME)시 (DATE)일, (LOCATION)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반드시 귀하께서 참석하시어 귀 자녀의 학업과 품행에 필요한 조치와, 앞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사용되었던 방법, 그리고 문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상호 만족할만한 해법 등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귀 자녀를 잘 알고 있는 학교측 책임자들도 참석할 것입니다. 본 컨퍼런스의 결과로서 귀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귀 자녀는 정학처분으로 다른 곳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이상 정규 수업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비 자발적인 전학 심의를 위한 컨퍼런스(면담)은 정학 컨퍼런스나, 귀 자녀가 이미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일체의 관련 컨퍼런스와는 별개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PHONE NUMBER)번으로 전화하시어 위에 알려드린 정확한 컨퍼런스 일시에 자녀와 함께 참석할 것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일시에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PHONE NUMBER)으로 전화하시어 상호간에 편리한 시간으로 약속시간을 새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심의 연기는 단 1 회만 허용됩니다. 본 통지문을 받으신 후에도 귀하께서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경우, 컨퍼런스는 귀하의 부재 하에 그냥 진행되며 결과를 귀하께 통보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컨퍼런스에 앞서 자녀의 기록 사본을 요청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컨퍼런스에 통역을 대동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본 통지문을 받으시는 즉시 담당자 (NAME AND PHONE NUMBER OF CONTACT PERSON OR OFFICE AT THE SCHOOL)에게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는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서비스는 통역자 수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컨퍼런스 일시에 통역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컨퍼런스 개최 전에 (NAME OF CONTACT PERSON OR OFFICE AT THE SCHOOL)가 귀하께 연락하여 요청하신 통역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직접 통역을 대동하실 수 있으며, 특히나 학교측에서 통역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그렇게 하실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컨퍼런스에 법률자문이나 기타 동반자를 대동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컨퍼런스 석상에서 자녀의 전학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자녀의 전학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석 담당관(Chief Executive Officer)/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나누고 공청회 개최 요청에 관한 귀하의 권리에 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번 문제를 귀하와 협의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____ 학교장

첨부: 수석 담당관/대리인

학교장 전학 추천서

(날짜)

(학부모님) 귀하:

(DATE), 저는 귀하와 만나 귀 자녀 (STUDENT'S NAME)의 전학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컨퍼런스 시, (STUDENT'S NAME)는 (SCHOOL NAME)에 (NUMBER OF YEARS)년간 재학한 사실을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STUDENT'S NAME)의 학업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DESCRIBE ACADEMIC RECORD) 이 학생은 현재 (NUMBER) 개 과목을 낙제하고 있으며 (NUMBER)개 수업에 빠졌고 (NUMBER)번의 결석 기록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시, (STUDENT'S NAME)는 (DESCRIBE DISCIPLINARY RECORD)에 관한 포괄적인 처벌 기록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REASON)로 인해 학교장 정학을, (REASON)로 인해 교육장 정학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전학 사유 기술)

(STUDENT'S NAME)가 (SCHOOL NAME)에 재학한 이후 저희는 이와 같은 사실을 (METHOD OF NOTIFICATION)를 통해 알려드렸으며, (STUDENT'S NAME)의 컨퍼런스에서 훈육 규정 위반 사실 및 학업 진척에 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STUDENT'S NAME)는 (TITLES OF INDIVIDUALS)과 (DATES)에 만날 것입니다.

(PROVIDE ANY OTHER ALTERNATIVES EXPLORED and PRIOR ACTION(S) TAKEN TO RESOLVE ISSUES WITH THE STUDENT)

컨퍼런스 결과, 본교에서는 귀 자녀의 학업적, 행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을 수석 담당관(Chief Executive Officer)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장

첨부: 수석 담당관/대리인
학부모

비자발적인 전학 심의 통지문

(날짜)

(학부모님) 귀하:

저는 (SCHOOL NAME)의 학교장 (PRINCIPAL'S NAME)로부터 (STUDENT'S NAME)의 전학을 건의 받았습니니다. 전학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기재)

본 섹션에는 다음과 같은 학생 정보를 기재합니다:

- 나이
- 학업 기록
- 출석
- 처벌 기록의 간단한 요약
- 정학 횟수 및 유형
- 기타 전학 사유

본 전학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귀하는 (SUSPENSION DIRECTOR)에게 전화 (PHONE NUMBER)번으로 연락하시어 이번 전학 조치를 심의하는 심의 개최를 요청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심의는 상호 편리한 시간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심의를 요청하신 경우, 위에 제시된 전학은 귀하께서 즉각적인 전학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이상 심의 이후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유보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심의를 요청하지 않으실 경우, 귀 자녀는 귀하가 더 빨리 전학시키는 데에 문서상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상, 10 일이 경과될 때까지 전학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전학에 동의하신다 해도, 심의 개최를 요청할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귀 자녀는 정학처분으로 다른 곳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이상 정규 학교수업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비자발적인 정학 심의는 정학 컨퍼런스나, 귀 자녀가 이미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일체의 관련 심의와는 별개의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신 경우, 해당 일시에 자녀를 동반하고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십시오. 또한 귀하께서는 심의에 통역을 대동하실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본 통지문을 받는 즉시 심의 오피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경우, 저희는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서비스는 통역자 수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귀 자녀의 심의 일시에 통역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의 오피스에서는 심의 이전에 귀하께서 요청하신 통역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직접 통역을 대동하실 수 있으며, 만약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통역과 함께 참석하십시오. 만약 이 일시에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HEARING OFFICE)에 (PHONE NUMBER)번으로 전화하시어 심의 일시를 상호간에 편리한 시간으로 새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심의 연기는 단 1 회만 허용됩니다. 본 통지문을 받으신 후에도 귀하께서 심의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경우, 심의는 귀하의 부재 하에 그냥 진행되며 결과를 귀하께 통보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심의에 법률자문이나 기타 동반자를 대동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 제공처 명단인 본 통지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 1 참고). 귀하께서는 또한 자녀의 기록 사본을 요청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심의에서, 학교측은 반드시 귀 자녀의 전학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귀하는 증인들에게 질문하고 귀 자녀의 입장에서 증거나 증인들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소환해야 할 증인이 있는 경우 (HEARING OFFICE)에 전화(PHONE NUMBER)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심의는 속기나 테이프 레코딩을 통해 기록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실 경우, 속기록이나 테이프 사본 중 제공 가능한 것으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심의 후 학교 업무일 기준 심일 이내에, 심의 결과 및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 사유를 설명한 통지문이 발송될 것입니다. 전학이 명령 되었을 경우, 이 통지문에는 귀 자녀가 전학하게 될 학교와 새 학교에 등교할 날짜도 명시될 것입니다.

수석 담당관(Chief Executive Officer)/대리인의 이와 같은 결정에 이의제기를 원하시는 경우 Chancellor,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 로 서한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동안 교육감으로부터 임시 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감 앞으로 발송한 모든 이의제기나 응급 요청은 동시에 교육청 법률서비스 담당실(Office of Legal Services)로도 보내셔야 합니다. 귀 자녀와 관련된 이번 상황을 귀하와 협의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PHONE NUMBER)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 담당관/대리인

첨부: 학교장
Hearing Office Supervising Attorney